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62
----------	-------

발의연월일 : 2024. 1. 4.

발 의 자 : 이주환 · 전봉민 · 박대수
정동만 · 지성호 · 김형동
김용관 · 백종현 · 권명호
안병길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
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
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
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이 있고,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
되는 이른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
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
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여 청원심의회는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등).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받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 청원기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통

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청원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통합된 청원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청원심의회) ① ----- ----- ----- ----- . 이 경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받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 청원기관

③ (생 략)	<u>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